# 인증의, 승인, 유지, 확대, 정지 및 취소 관련 규정

## - 총　　칙 -

Eco-Quality인증업체로 승인된 공급자 또는 동 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인증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야 하고,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.

### □인증범위

한국인정기구(KOLAS)로부터 인정받은 인정범위로서 섬유제품, 가죽제품,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. 단, 인증기술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신청자와 부원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### □인증모델

| 섬유제품 | 가죽제품 | 합성수지제품 |
|---|---|---|
| 유아용섬유제품 | 천연가죽제품 | 유아용합성수지제품 |
| 직접피부접촉제품 | 인조가죽제품 | 생활용합성수지제품 |
| 간접피부접촉제품 | 천연모피제품 | 산업용합성수지제품 |

모델의 구분은 해당 인증기술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